

의안번호	제54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4. 10. 23. (제19회)	

**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
폐지규칙안**

제출자	행정국장 오병혁
제출연월일	2014. 10. 23.

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칩

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대체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, 규칙은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통합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주요 내용

-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규정삭제
-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중단으로 판매인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짐
-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, 판매수수료, 감독, 교환 등 관련 규정 삭제

#### 4. 참고사항

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

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기 타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, 별첨

- 입법예고(2014.9.26. ~ 2014.10.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- 성별영향분석평가

·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국 재무과	
연 락 처	(02) 3423 - 5265